

對日補償청구운동 확산

713 <9>

일본이 얼마나 전후처리를 회피하고 피해자보상을 외면 했는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전쟁책임자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철저히 당사국의 사정하고 보상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전승국인 미국과 캐나다조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 수용했던 일본계 미국인과 캐나다인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었다.

各國의事例

일본정부가 고지압인 사할라 자식들이 한때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보면이 있거나 하지, 있다면 부끄러움을 느낀지 물어보고 싶다.

일본이 일본에서 30만명 정도를 받고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은 전후 「연방헌법」을 제정, 독일국민개인의 전신증장뿐만 아니라 재산의 변제했다. 독일인 개인개인의 재산은 유대인에게 변제된 총액의 50~100%에 불과하다(1조~1조5천억 마르크)에 달했다. 독일인도 이스라엘에 대해 「연방헌법」에 따라 전전환자와 그 가족을 보상하고 30만마르크의 국가배상도 실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의 민간인도 전신증유대인의 강제수용소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지멘스사가 2천2백3명의 대해 7백18만 마르크를 보상하였을 비롯, 6개기업이 1만5천6백여 마르크에 대해 7천1백93만 마르크를 보상했다.

獨·伊, 國籍안다지고 보상

반화생자에 대해서도 원호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조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독일은 전쟁중 별할했던 오스트리아가 전후 독립했을 때 서독에 거주하는 오스트리아인은 자기의사에 따라 별할 당시 강제수용되었던 독일유교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파리에서 이틀중 전회생자는 독일의 독일국민으로서 독일국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인을 전신증유대인으로서 부러리고 전후에는 「대한국민의 일본노정을 바랄랐다. 그리고는 전후 제정된 17개원

「조선민국인 전신증유대인 보상법」(일명 「시민자유법」)을 제정, 전신증 유대인들을 위한 일련의 특별법을 제정, 사과하고 생략한 6만명의 대해 1인당 5만마르크의 보상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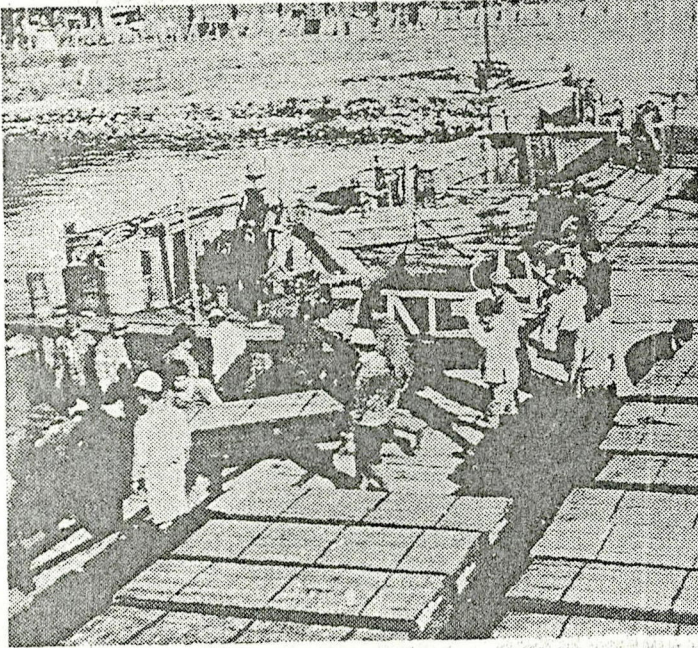
보상대상에 있는 것은 현재 88년 「대한국민유족 보상법」을 제정, 대상 3만여명(전사자 3만명, 전신증자 4백명)에 대해 1인당 5만마르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52년 「대한국민유족 보상법」을 제정, 대상 3만여명(전사자 3만명, 전신증자 4백명)에 대해 1인당 5만마르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日원호법 한국인 제외

臺灣人 유족엔 弔慰金

美·加도 강제수용日人에 2만弗씩 지급



◇패전후 일본이 필리핀에서 수습해 실고온 전사자들의 관이 부두를 짝 메웠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 군인·군속들도 엄청나게 많이 포함돼 있었으나 일본은 보상은 커녕 유해송환조차 기피했다.

약으로 돈을 문제와 한 도영구히 해결됐다』 「미군」 것이다. 공식적으로 따지자 요구를 포기한 대만 구권정파로 처리된 「불행」이기는 아니지만 일본과 유족 보상요구만 거부하고 있다.